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(차규근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 호 5285

발의연월일: 2024. 11. 6.

발 의 자:차규근・오기형・황운하

김준형 • 박은정 • 서왕진

강경숙 · 신장식 · 정춘생

김선민·조 국·이해민

김재원 의원(13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현행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르면, 지주회사를 설립·전환하기 위해 자회사의 주식을 지주회사에 현물출자 할 때 발생하는 양도차익에 대해서는 주식을 처분할 때까지 과세이연하도록 하고 있음. 단, 2010년 세법개정을 통해 주식 처분의 사례로 명시적으로 기재되었던 '상속 및 증여' 문구를 삭제한 바 있음. 처분에는 상속 등이 포함된다는 이유에서임. 그러나 정작 이와 관련된 소송이 제기되자, 법원은 상속이라는 문구가 삭제되었기 때문에 과세이연이 계속될 수 있다고 판결하였음.

이에 따라 지주회사 과세이연을 받은 법인이나 개인주주의 주식이 상속되더라도 과세를 할 수 없게 되었음. 이는 본래 법 취지에 어긋날 뿐 아니라 특정 기업 또는 주주에 대한 특혜가 될 수 있는 바, 주식을 처분하는 경우에 상속하거나 증여하는 경우를 명확히 포함하여 과세 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것임(안 제38조의2제1항).

법률 제 호

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
조세특례제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38조의2제1항 중 "처분"을 "처분(상속하거나 증여하는 경우를 포함한다. 이하 이 조에서 같다)"로 한다.

부 칙

이 법은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혅 행 개 정 아 제38조의2(주식의 현물출자 등에 제38조의2(주식의 현물출자 등에 의한 지주회사의 설립 등에 과 의한 지주회사의 설립 등에 과 세특례) ① -----세특례) ① 내국법인의 내국인 주주가 2026년 12월 31일까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 추어 주식을 현물출자함에 따 라 「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지주회사 (「금융지주회사법」에 따른 금융지주회사를 포함한다. 이하 이 조에서 "지주회사"라 한다) 를 새로 설립하거나 기존의 내 국법인을 지주회사로 전환하는 경우 그 현물출자로 인하여 취 득한 주식의 가액 중 그 현물 출자로 인하여 발생한 양도차 익에 상당하는 금액에 대하여 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주주가 해당 지주회사 의 주식을 처분할 때까지 금융 -----처분(상속하거나 증 여하는 경우를 포함한다. 이하 투자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과 이 조에서 같다)----세를 이연받을 수 있다.

•